문화체육관광부

수신 교육부장관(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)

(경유)

제목 학교폭력 경기인 출전금지 강화 조치 시행 안내 및 전파 요청

1. 관련근거

가. 체육진흥과-4616(2025.9.12.), 체육진흥과-4765(2025.9.19.)

나.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845(2025.9.22.)

2. 위와 관련하여 `2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관련기관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행일(2025.10.1.) 이후 처분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
- 등록제한에 따른 효과: 대회 출전 등 경기인 활동자격 제한

현행	개정(안)
제14조(등록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. 1.~3. "생략" <신설>	**제14조(등록 결격사유 등)** ① "현행과 같음" 1.~3. "현행과 같음" 4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단,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가.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: 3개월 나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의 금지 : 3개월 다. 학교에서의 봉사 : 5개월 라. 학내외 전문가,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: 8개월 마. 사회봉사 : 8개월 바. 출석정지 : 10개월 사. 학급교체 : 10개월 아. 전학 : 12개월 (이하 현행과 같음 생략)
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. 1.~10. "생략" 11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② "현행과 같음" 1.~10. "생략" 11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붙임. 경기인등록규정(20251001)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행정주사	**김미선**	행정사무관	**김기중**	체육진흥과장	전결 2025. 12. 3. **석진영**

협조자

시행 체육진흥과-7027 접수

우 30119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5동 412호 체육진흥과 / http://www.mcst.go.kr

전화번호 044-203-3133 팩스번호 044-203-3495 / mint6500@korea.kr / 대국민 공개